



총학생회 회칙

문서번호	YIT-Z-0040
제정일자	1990.09.01
개정일자	2020.02.06
페이지	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연암공과대학교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6.02.26.)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학문화를 정착시키며, 회원 본연의 자세에서 학생 자치활동의 실천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① 본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휴학 및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는 그 기간 중에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내에서 정당 또는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기구) 본회의 회칙 제2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협의회,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 동아리 연합회를 둔다.

제7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8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술 연구 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 활동

③ 인권복지후생 활동

④ 봉사 활동

⑤ 기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 자치활동

제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02.06.)

제2장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제10조(직위) ① 총학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02.06.)

제12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권을 가지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④ 학생 자치활동의 중대한 사항을 학교 당국에 건의할 수 있다.
- ⑤ 본회의 회칙개정 발의권을 갖는다.
- ⑥ 학회협의회의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 ⑦ 회장 및 부회장은 학회협의회의 불신임결의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불신임 최종결 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에서 해임될 수 없다.
- ⑧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3조(의무) 총학생회장은 학회협의회의 출석 요구시 학회협의회에 출석하여 관련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14조(선출)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총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2.06.)

제15조(자문위원회)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총학생회장 직속의 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동아리연합회장, 사생장, 신문방송국 실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06.)

제3장 학회협의회

제16조(명칭) 이회는 학과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0.02.06.)

제17조(직위) 본회는 총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8조(목적) 본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결기구로서 원활한 기능을 통하여 대학문화를 정착시키며 학생자치 활동 향상 실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구성) 본회는 각 학회 학회장, 부학회장, 반대표들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단, 의장이

부의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02.06.)

제20조(기구) ① 본회의 회칙 제 18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은 각 학회 반대표들로서 본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단, 일반 학우로 임명하고자 할 때는 본회 회원 2/3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 예산 심의 및 결산에 관한 감사권
- ② 회칙 개정안 발의권
- ③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불신임 결의권
- ④ 총학생회 예산집행 심의권
- ⑤ 총학생회장 출석 요구권
- ⑥ 졸업준비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의결권
- ⑦ 기타 본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회비의 일정금액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02.06.)

제23조(의장의 직무) ① 본회의 의장은 본회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총회를 관장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임기) 본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02.06.)

제25조(학회협의회 의장의 업무 및 권한) 본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학과협의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2.06.)
- ② 총학생회장·부회장 불신임 결의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본회 및 분과위원회를 소집, 총괄한다.
- ④ 학생자치 활동의 중대한 사항은 학교당국에 건의할 수 있다.
- ⑤ 총학생회 예산 심의 및 결산에 관한 감사위원장이 된다.
- ⑥ 분과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⑦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권을 갖는다.
- ⑧ 분과의 신설 및 통폐합을 할 수 있다.
- ⑨ 본회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한다.
- ⑩ 차기 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 ⑪ 졸업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⑫ 기타 그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선출) 본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 학회장 중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7조(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자에 한한다.

제28조(피선거권) 학회협의회의 의장 및 학회장의 피선거권의 자격을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② 본회의 회원으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각 학회 학회장에 당선된 자
- ③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학기 성적이 평균B0(3.0) 이상인 자 (개정 2013.5.28) (개정 2020.02.06.)

제29조(재선거) 선거과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정식 서면으로 선·관·위에 재소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위 사실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결과를 무효로 선포하고 15일 이내에 재선 거를 실시한다.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은 전임 각 학회장 및 반대표(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1조(졸업준비위원회) ① 위원회는 졸업예정자들의 올바른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집행한다.

- ② 위원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각 학회장들로 구성한다.(단, 필요에 따라 반대표들도 포함할 수 있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졸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와 올바른 사회진출을 위한 사업을 집행 한다.

제4장 학회협의회의 총회

제33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과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2.06.)

제34조(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학기초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본 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학생회장이 심의를 요구한 타당한 사안이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④ 본회의 소집은 5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35조(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① 학생회비 승인권
- ② 총학생회 예산·결산의 승인권
- ③ 총학생회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 ④ 총학생회 회칙개정 발의 및 심의 의결권
- ⑤ 학생회장,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

- ⑥ 집행위원회 각부서장 출석 요구권
- ⑦ 예비비 지출 의결 동의권
- ⑧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사항 동의 및 결의권
- ⑨ 본회 회칙 개정 발의 및 심의 결의권

제36조(불신임 결의권) ① 총회는 총학생회장, 부회장이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② 불신임은 총회 재적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그 사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때 불신임 대상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최종 결의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제37조(총학생회 예산결산 감사) 총회는 총학생회의 회계 연도 전반기와 후반기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을 구성한다.(단, 필요시 의장은 일반 학우 5인 이상을 참관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보 칙

제38조(공고) 회칙 개정 발의시 의장은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39조(의결) ① 회칙개정은 본회의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발의된 개정안은 공고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에서 의결한다.
- ③ 기타 의결사항은 본회의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0조(공포) 의결 확정된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한다.

제41조(시행세칙) 이 회칙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본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42조(직위)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3조(구성) 집행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4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비를 산정하여 학회협의회 총회에 상정한다.
- ② 예산을 편성하여 학회협의회 총회에 상정한다.
- ③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한다.
- ④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에서 위임한 사안을 집행한다.
- ⑤ 기타 학회협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45조(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당국의 요구가 있을때,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46조(부서) 본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① 총무국 : 본회의 사무, 회계관련 각종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업무조정을 담당한다.
- ② 기획국 : 본회 사업의 기획 및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와 문서를 담당한다.
- ③ 문화국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④ 홍보국 : 본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홍보와 여론조사를 담당한다.
- ⑤ 인권복지국 : 학내 모든 복지시설 및 회원의 인권과 교풍확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⑥ 체육국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⑦ 여학생국 : 여학생의 학내의 활동 일체 및 친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장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제47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본회의"라 칭한다)는 학생대표자들로 구성된 학생대표자 협의체로서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과 전체회원에 관한 중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단, 학회협의회에서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불신임을 결의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사안을 최종 의결한다.)

제48조(목적) 본회의는 각 자치기구 상호간의 현안이나 활동 등에 관한 민주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정회원에게 그 내용을 홍보하고 학생자치활동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구성) 본회의는 전체 또는 해당 단위에서 직접 또는 간접선거로 선출된 학생대표자 들로 구성하며 학보사 편집장, 방송부장, 교지편집장을 포함한다.

제50조(기능) 본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①회칙개정안 발의
- ②학회협의회에서 결의한 불신임 결과에 대한 최종결의

③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협의

제51조(의장) 본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단, 총학생회장, 부회장 불신임 결의를 최종 결의할 때에는 학회협의회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52조(소집) 본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둔다.

- ①정기총회는 매학기 1학기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②임시총회는 방학시나 긴급을 요할 경우 또는 제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본회의 소집은 5일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53조(의결) 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회원 1/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회협의회에서 회부된 총학생회장, 부회장 불신임 결의를 최종 의결할 때는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불신임 최종결의가 통과되면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개월 이내 일 때는 공석으로 한다.)

제7장 동아리 연합회

제54조(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본교 동아리인을 대표하는 본회 특별 자치기구이다.

제55조(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된다.

제56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품행이方正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②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학기 성적이 평균 B0(3.0) 이상인 자 (개정 2013.5.28) (개정 2020.02.06.)

제57조(선출) 제 56 조의 자격을 갖춘자 중 동아리 연합회 회원중 선출한다.

제58조(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9조(업무 및 권한)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 사용수칙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전체 동아리를 총괄한다.

- ② 동아리 연합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동아리 관련 결정사항을 지원하고 동아리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60조(회칙) 동아리 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 에서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8장 학생지도위원회

제61조(목적) 총학생회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62조(구성)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3조(기능)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 자치활동의 지도 육성
- ②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재정에 관한 사항
- ⑤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장 재 정

제64조(회비) ① 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회비는 본회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③ 총학생회의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매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하고 학회협의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예산편성) ① 각 자치기구장은 총학생회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고 총학생회장은 그 예산안을 취합하여 학회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회협의회는 상정 7일 이내에 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③ 예산안이 소정 기일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회장은 전년도 물가 인상분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④ 예산 성립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예비비의 지출은 학회협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결산) 총학생 회장은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회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감사) 본회는 회계 연도 전반기와 후반기의 회계업무에 관하여 학회협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68조(회칙개정 발의) 본회의 회칙개정발의는 학회협의회, 집행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에서 규정된 내용에 의거 발의할 수 있다.

제69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제68조의 발의에 의하여 학회협의회총회에서 제39조 에 의거 의결하여 개정한다.

제70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06.)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직) 1) 학도 호국단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를 임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본 개정 회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회칙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회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회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회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회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